

1. 담보 부당취득으로 인한 부실여신 발생 초래

2. 제제대상사실

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39조 제3항 및 「여신업무방법서」 제1편 제4장 제2절 제5조에 의하면 사찰이나 불교단체의 재산을 담보로 취득할 경우에는 「전통사찰보존법」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

2006.7.27.●●●●●●●●●(대표이사 ○○○)외 2명의 공동 채무자에 대한 대출 7억원(2006.9.15. 3억원, 2006.11.10. 5억원을 추가 하여 총 15억원 취급)을 취급함에 있어 ■■■■■■■■ ▲▲▲ 소유의 사찰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없이 담보로 제공(근저당권 설정)받음에 따라 2008.5.29. ▼▼지방법원의 판결로 동 근저당권이 상실됨으로써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금 전액(15억원)의 부실 발생을 초래하였음

3. 제제조치내용

제제대상	제제내용
임 원	문책경고 : 1명
직 원	견책 : 1명

< 관련법규 >

1.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39조 제3항
2.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4조
3. 「신용협동조합여수신업무방법기준」 제2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
4. 「여신업무방법서」 제1편 제4장 제2절 제5조